

☐ 피해자 인정
☐ 지원금 지급

결정번호: 제 호

성명:

주소:

1.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첨부 1.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
2.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

이
호
지

10 · 290 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청인